옥천군의회 공고 제2019 - 11호

#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

옥천군 읍·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(조례안예고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30일

옥 천 군 의 회 의 장

1. **자치법규명** : 옥천군 읍·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(대표 발의자 : 추복성 의원)

2. **발의의원 : 추복성 의원, 이용수 의원**

3. **제정이유**

○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·면 다목적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4. **주요골자**

○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(안 제1조 및 제2조)

○ 운영위원회 구성, 임무, 위촉위원 임기 및 해촉 (안 제3조~제6조)

○ 운영위원회 간사, 회의, 위원수당(안 제7조~제9조)

○ 시설용도, 관리계획 및 예산회계 등(안 제10조~제14조)

○ 사용허가 및 취소, 권리양도 제한 등(안 제15조~제18조)

○ 준용 (안 제19조)

## 5. 의견제출

○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30일까지 옥천군의회의장(참조: 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(☎043-730-3943, FAX 733-9225)

## ※ 의견통지내용

가.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 · 단체일 경우 기관 ·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 6. 의견제출

○ 옥천군 읍·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 조례 제 호

# 옥천군 읍·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·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읍·면 다목적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.

## 제2장 운영위원회

제3조(구성)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·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읍·면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위원은 관내 기관·단체장, 이장, 새마을 지도자, 주민자치위원 또는

관내 거주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임무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 방안 강구

2.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

제5조(위촉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당해 읍·면 관할 구역 외로 거주지 또는 근무지를 이전하였을 때

2.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

3.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게을리 하였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을 때

제7조(간사)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다목적회관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간사는 회의 진행사항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9조(위원수당)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

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## 제3장 시설 관리

제10조(시설용도) ① 회관에는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.

1. 회의실(다목적실)
2. 어린이집
3. 주민자치 프로그램운영실(강의실)
4. 컴퓨터실
5. 건강관리실
6. 체력 단련실
7. 관리사무실
8. 탕비실
9. 방송실
10. 찜질방
11. 기타(창고 등)

② 회관의 시설은 유관단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11조(관장)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, 관장은 읍·면장이 겸한다.

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할 업무를 총괄하며 제12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.

제12조(관리인)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.

제13조(관리계획)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·면장은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한다.

제14조(예산회계) ① 읍・면장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## 제4장 사용

제15조(사용허가)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, 관장은 회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사용 기간은 관장이 결정한다.

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관장이 결정한다.

제16조(사용허가취소)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,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.

1. 관계 법령, 조례,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
2.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
3.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, 제한,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않는다.

제17조(권리양도 제한)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.

제18조(손해배상)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

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보칙

제19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〔별표 1〕

# 읍·면 다목적회관 명칭 및 위치

| 번호 | 회 관 명 | 위 치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동이면 다목적회관 | 옥천군 동이면 평산4길 2 | |
| 2 | 안내면 다목적회관 | 옥천군 안내면 현리길 66 | |
| 3 | 청성면 다목적회관 | 옥천군 청성면 산계길 53 | |
| 4 | 청산면 다목적회관 | 옥천군 청산면 지전1길 5 | |
| 5 | 이원면 다목적회관 | 옥천군 이원면 신흥4길 17-5 | |
| 6 | 군서면 다목적회관 |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494 | |
| 7 | 군북면 다목적회관 | 옥천군 군북면 옥천로 1116-9 | |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　례　명 : 옥천군 읍·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 례 안 | 의　　견 |
|---|---|
| | |